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27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274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19가단513032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변론종결 2022. 11. 29.

판결선고 2022. 12.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19가단51303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0,018,622원 및 그중 19,515,138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와 사이에 2018. 7. 25. 및 2019. 4. 4.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29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9. 4. 4.1) 접수 제140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패소한 A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범위

원상회복청구 부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A에 대한 부분과 원상회복청구 부분 제외). 다만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 제8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A이 중고건설기계(레미콘 차량) 대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A은 피고로부터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7. 25.부터 2018. 9. 13.까지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을나 제17호증).

그러나 A이 P와 함께 C, Y(주), Z(주), AA(주), AB(주), AC 등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을나 제4, 10호증), 위 사업체들의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위 사업체들의 운영과 연관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보험료, 카드대금의 결제로 사용된 점, ②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특정 채권자에게 송금된 점, ③ 특히 P의 주장(을나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다수 거래처에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차용금을 그 변제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9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을 「특히 2차 근저당권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별지